



보도	2025.10.28.(화) 석간	배포	2025.10.27.(월)		
담당부서	보험감독국 특수보험팀	책임자	팀장	변지영	(02-3145-7471)
		담당자	선임	홍윤태	(02-3145-7472)

「일임식 자산유보형 공동재보험」 신규 도입으로 보험회사의 자본관리 역량 제고를 지원하겠습니다.

- 일임식 자산유보형 공동재보험 도입에 따른 「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」 및 「공동재보험 업무처리 가이드라인」 개정 -

I 개요

- 금융감독원은 「일임식 자산유보형 공동재보험」 도입을 위해 보험업 감독업무시행세칙 및 공동재보험 업무처리 가이드라인을 개정
 - 기존 거래방식* (①자산이전형, ②약정식 자산유보형)이 거래 참여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기 곤란하다는 업계 건의에 따라
 - * ① (자산이전형) 원보험사의 운용자산이 재보험사로 이전됨에 따라 원보험사가 신용 위험(재보험사 파산) 및 유동성위험에 노출
 - ② (약정식 자산유보형) 원보험사에 운용자산이 유보되므로 재보험 계약기간 동안 재보험사가 유보자산 운용에 관여하기 어려워, 재보험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음
 - 기존 방식의 장점을 결합한 「일임식 자산유보형 공동재보험」을 신규 도입하여 공동재보험 거래 활성화 추진

II 일임식 자산유보형 공동재보험 도입

가. 일임식 자산유보형 공동재보험 거래구조

- 「일임식 자산유보형 공동재보험」은 원보험사가 운용자산을 계속 보유하되, 동 운용자산의 운용권한 및 운용손익은 재보험사에 귀속
 - 자산이전형에 비해 원보험사의 신용위험 및 유동성 부담 감소가 가능하며, 약정식 자산유보형에 비해 재보험비용 저감

나. 「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」 개정내용

- 「일임식 자산유보형 공동재보험」 거래 시 원보험사가 재보험 관련 자산을 보유하지만, 자산 운용권한 및 손익은 재보험사에 귀속되므로
 - 재보험사에 귀속되는 운용손익 등이 원보험사의 경영실태평가, 공시기준이율 등에 반영되지 않도록 관련 기준* 정비
 - * 경영실태평가(별표13), 지급여력비율(별표22), 공시기준이율(별표27) 산출시 제외

다. 「공동재보험 업무처리 가이드라인」 개정내용

- 「일임식 자산유보형 공동재보험」 거래가 보다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상 회계처리지침 및 FAQ 등을 정비
 - 각 거래단계별(①계약체결, ②재보험료 지급, ③정산 등) 회계처리 예시 및 공동재보험 거래 관련 주요 질의응답 등을 제공

Ⅲ 향후계획 및 기대효과

- 개정 「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」은 '25.10.28.부터 시행 예정이며, 「공동재보험 업무처리 가이드라인」은 금감원 홈페이지*에서 확인 가능
 - * 금감원 홈페이지(www.fss.or.kr) > 업무자료 > 공통 > 업무해설서
- 거래 참여기관의 수요 등을 반영한 「일임식 자산유보형 공동재보험」 도입으로 공동재보험 시장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
 - 앞으로도 금융감독원은 공동재보험을 활용한 보험사의 자본관리 역량 제고를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<http://www.fss.or.kr>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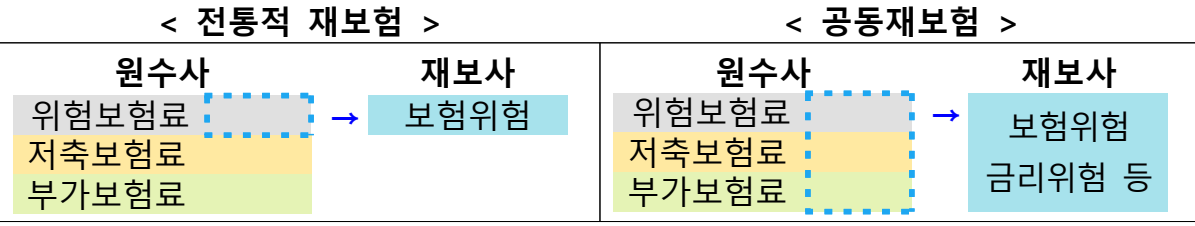
참 고 **공동재보험 개요 및 거래유형**

1. 공동재보험(Co-insurance) 개요

□ 위험보험료 뿐만 아니라 저축보험료 등 모든 보험료(영업보험료)를 재보험사에 출재하는 방식

- 보험위험의 전가만을 목적으로 하던 전통적 재보험*과 달리 금리·해지위험 등도 전가 가능 (☞ K-ICS 관리·ALM에 효과적)

* 주로 위험보험료만 출재하는 1년 갱신형으로 거래(YRT, Yearly Renewable Term)



2. 주요 거래유형 비교

- 「일임식 자산유보형 공동재보험」 도입으로 다음 3가지 방식 가능
 - (자산이전형) 원보험사가 재보험 관련 자산을 재보험사에 이전
 - (약정식 자산유보형) 원보험사가 재보험 관련 자산을 보유하는 대신 재보험사에 약정이자를 지급
 - (일임식 자산유보형) 원보험사가 재보험 관련 자산을 보유하되, 자산의 운용 권한 및 손익은 재보험사에 귀속

< 공동재보험 유형별 거래 구조 >

